##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54 발의연월일: 2021. 3. 17.

발 의 자:양금희·전봉민·홍준표

김형동 • 윤창현 • 서일준

윤재옥・김용판・이 영

서병수 · 김기현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하게 표시한 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실제 생활화학제품 등을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
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위의 금지) ①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0.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
	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
	<u>시 또는 광고</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